##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176 발의연월일: 2024. 12. 3.

발 의 자:위성곤·박홍배·남인순

조인철 • 이개호 • 서영교

김한규 · 박희승 · 주철현

허 영·강유정·문대림

의원(12인)

## 제안이유

최근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어린이의 생태감수성을 높이고, 숲에서 함께하는 자연체험을 통해 자아개념 형성과 심리안정, 사회성 발달과 학습능력 향상 등을 위한 산림교육의 가치와 중요성이 부각되고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유아, 어린이 및 청소년에 대한 산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할뿐더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자도 아이들을 교육·지도하는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막기 위한 명시적인 규정을 마련하지 못한 실정임.

이에,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유아에게 숲사랑 정신과 정서 함양을 위한 유아숲사랑 지도·교육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성폭력 범죄자는 산림교육전문가가 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아이들이 숲을 체험하고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어린이 숲날'을 지정하도록 하며, 산림교육 프로그램 인증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산림교육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등록권자를 산림 청장과 시·도지사에게 확대하여 규제 완화하고자 함(안 제8조).
- 나. 자격증 교부에 관한 사항을 다른 자격증과 마찬가지로 시행규칙에 서 정하도록 함(안 제10조제1항).
- 다.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한 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함(안 제10조제2항).
- 라.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범죄자를 산림교육전문가 결 격사유에 추가함(안 제11조제5호 신설).
- 마. 유아숲체험원에 포함된 산지는 임야 외의 지목으로 변경 불가하고, 지자체 소관 유아숲체험원 등록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함(안 제12조제7항 신설).
- 바.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유아숲사랑 지도·교육사업을 실시하도록 함 (안 제16조의2 신설).
- 사. 어린이가 숲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어린이 숲날'을 정하도록 함(안 제20조의2 신설).

#### 법률 제 호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8조제3항에 따른 인증심의"를 "등록"으로, "수행하기"를 "지원하기"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산림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인증 등)"을 "(산림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등록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본문 중 "산림청장에게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산림청장 또는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산림교육프로그램의 등록"으로 하며, 같은 항단서 중 "인증이"를 "등록이"로, "인증신청"을 "등록신청"으로 하고,같은 조 제3항 중 "산림청장"을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인증기준에 적합하면 제6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이를 인증"을 "등록기준에 적합하면 등록"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제2항에 산림교육프로그램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 1.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 산림청장
- 2. 제1호 외의 국유재산 · 공유재산 및 사유재산: 시 · 도지사

제8조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인증을"을 "등록을"로, "인증표시"를 "등록표시"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인증을"을 "등록을"로, "인증표시"를 "등록표시"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인증의"를 "등록의"로, "인증에"를 "등록에"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인증의 변경 및 취소)"를 "(등록의 변경 및 취소)"로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인증을 받은 산림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을 "산림교육프로그램의 등록 내용"으로, "산림청장에게 인증내용"을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내용"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산림청장"을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산림청장은 제8조제3항의 인증을 받은"을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8조제3항의 인증을 받은"을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8조제3항에 따라 등록된"으로, "인증을취소"를 "등록을 취소"로 하며, 같은 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 중 "인증"을 각각 "등록"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인증기준"을 "등록기준"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인증표시와 다르게 인증표시"를 "등록표시와 다르게 등록표시"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대통령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를 "제1호 또는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제11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 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 람
  - 가. 「아동복지법」 제17조의 금지행위를 하여 같은 법 제71조제1 항에 따른 죄
  -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이 경우 등록된 토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으로 본다.
- 제1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종전의 제1호) 중 "산림청장"을 "시·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산림청장이 조성하는 유아숲체험원: 산림청장

⑦ 제2항에 따라 조성된 유아숲체험원에 포함된 산지는 임야 외의 지목으로 변경할 수 없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6조의2(유아숲사랑 지도·교육) ① 산림청장은 유아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함으로써 숲사랑 정신과 정서를 함양할 수 있도록하기 위하여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숲사랑 지도·교육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유아숲 사랑 지도·교육 사업을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제2호 중 "인증을 받은"을 "등록을 한"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유아숲 사랑 지도ㆍ교육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0조의2(어린이 숲날) ① 어린이가 숲을 체험하고 그 중요성을 느끼게 하기 위하여 매년 6월 9일을 어린이 숲날로 정한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어린이 숲날에 기념행 사 등 적합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제2호 중 "인증"을 "등록"으로 한다.

제24조제2호 중 "인증"을 "등록"으로 한다.

제26조제2항제1호 중 "인증을"을 "등록을"로, "인증표시"를 "등록표시"

로 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산림교육전문가의 자격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자격 취소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적용한다.
- 제3조(산림교육전문가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5호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 제4조(산림교육프로그램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산림교육프로그램은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림교육프로그램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산림교육심의위원회의 설	제6조(산림교육심의위원회의 설치
치·운영) ① 산림교육에 관한	• 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소속으로 산림	
교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u>.</u>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에	<u>&lt;삭 제&gt;</u>
관한 사항	
5. · 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는 산림교육에 관한	<b>4</b>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 · 연구하	
고 제8조제3항에 따른 인증심의	- <u>등록</u>
업무를 효율적으로 <u>수행하기</u> 위	<u>지원하기</u>
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8조(산림교육프로그램의 개발	제8조(산림교육프로그램의 개발・
<u>•보급 및 인증 등)</u> ① (생 략)	보급 및 등록 등) ① (현행과 같
	승)
② 산림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	②
거나 개발 • 보급하려는 자는 농	
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u>산림청장에게 산림교육</u> 프로그램의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5항을 위반하거나 제9조제2항에 따라 <u>인증이</u> 취소 된 자는 3년간 <u>인증신청</u>을 할 수 없다.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된 산림교육프로그램이 농림축산식품부렁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적합하면 제6조제1항에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인증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3항의 <u>인증을</u> 받은 자는 해당 산림교육프로그램에 대하 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u>인증표시</u>를 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인증을 받지 아니한산림교육프로그램에 제4항의

<u>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u>
체의 장에게 산림교육프로그램
의 등록
<u>등록이</u>
<u>등록신청</u>
③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
<u>의 장</u>
<u>등록기</u>
준에 적합하면 등록
④ 제2항에 산림교육프로그램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1.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 : 산림
<u>청장</u>
2. 제1호 외의 국유재산·공유재
<u>산 및 사유재산 : 시·도지사</u>
<u> ⑤</u> <u>등록을</u>
<u>등록표시</u>
<u>⑥</u> <u>등록을</u>

<u>인증표시</u>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제3항에 따른 <u>인증의 유효기</u>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 ① 제6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 간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 장할 수 있다.
- ⑧ <u>인증의</u> 표시방법, 신청절차, 인증기준, 유효기간 연장 및 그 밖에 <u>인증에</u> 필요한 사항은 농 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9조(인증의 변경 및 취소) ① 제 8조제3항의 인증을 받은 산림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인증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산림청장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같음할 수 있다.
  - ② 산림청장은 제8조제3항의 인 증을 받은 산림교육프로그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면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u> 등녹표시</u>
 ⑦ 등록의 유효기간 은 등록  <삭 제>
8 <u>등록의</u>
<u>등록에</u> 
제9조(등록의 변경 및 취소) ① -
산림교육프로그램의
등록 내용
<u>산림청장 또는</u>
시·도지사에게 등록내용
<u>산</u>
<u>림청장 또는 시·도지사</u>
②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8조제3항에 따라 등록된
<u>등록을 취소</u>

다만,	제1호에	해	당하면	ユ	<u>인</u>
증을	취소하여	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 2. 제8조제3항의 <u>인증기준</u>에 적 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3. 제8조제4항의 <u>인증표시와 다</u> <u>르게 인증표시</u>를 한 경우
- 4. (생략)
- 제10조(산림교육전문가) ① 산림 청장은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 관에서 산림교육 전문과정을 이 수한 사람에게 <u>대통령령</u>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 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을 교부하 여야 한다.
  -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 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 3. (생 략) <신 설>

-,
<u>등록</u> .
1
<u>등록</u>
2 <u>등록기준</u>
3 <u>등록표시와 다르</u>
<u>게 등록표시</u>
4. (현행과 같음)
세10조(산림교육전문가) ①
<u>농림축산식품부렁</u>
-,
2
<u>제1호 또는 제4호</u>
1. ~ 3. (현행과 같음)
4.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③ ~ ⑦ (생 략)

- 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산림교육전문 가가 될 수 없다.
  - 1. ~ 4. (생략) <신 설>

#### 해당하게 되는 경우

-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11조(산림교육전문가의 결격사 제11조(산림교육전문가의 결격사

  - 1. ~ 4. (현행과 같음)
  -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 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 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 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 · 면제된 날부터 1 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아동복지법」제17조의 금지행위를 하여 같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죄
    -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 폭력범죄
    -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에 관한 법률 | 제2조제2호 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 죄

제12조(유아숲체험원의 등록 등) 기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하려는 자는 유아숲체험원의 명칭·소재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다음각 호의 구분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 <신 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성하는 유아숲체험원: 산림청장
  (생략)
- ③ ~ ⑥ (생 략) <u><신 설></u>

① (생 략) <신 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에 따른 죄로서 다른 법률
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제12조(유아숲체험원의 등록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이 경우 등록된 토지는 「산
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
<u>으로 본다.</u>
1. 산림청장이 조성하는 유아숲
체험원: 산림청장
<u>2</u>
- <u>시·도지사</u>
<u>3</u> . (현행 제2호와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2항에 따라 조성된 유아숲
체험원에 포함된 산지는 임야
외의 지목으로 변경할 수 없다.
<u>⑧</u> (현행 제7항과 같음)
제16조의2(유아숲사랑 지도・교
육) ① 산림청장은 유아가 산림

제20조(지원) 산림청장 또는 지방 저자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산림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1. (생 략)
- 2. 제8조제3항에 따라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받은 자3. ~ 6. (생 략)

<신 설>

<신 설>

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함으로써
숲사랑 정신과 정서를 함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숲사랑 지도ㆍ교
육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유
아숲 사랑 지도・교육 사업을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세20조(지원)
1. (현행과 같음)
2
<u>등록을 한</u>
3. ~ 6. (현행과 같음)
7.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유아
숲 사랑 지도・교육 사업을 위
탁받아 운영하는 자
세20조의2(어린이 숲날) ① 어린이가
숲을 체험하고 그 중요성을 느
끼게 하기 위하여 매년 6월 9일을
어린이 숲날로 정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1조(	청문) 산림청장 또는 시ㆍ
도지/	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
야 한	다.

- 1. (생략)
- 2. 제9조제2항에 따른 산림교육프로그램의 <u>인증</u> 취소
- 3. ~ 5. (생략)
- 제2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기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생략)
  - 2.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받은 자
  - 3. ~ 7. (생략)

제26조(과태료)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만원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항에 따른 어린이 숲날에 기념
	행사 등 적합한 사업을 실시할
	<u>수 있다.</u>
제	21조(청문)
	1. (현행과 같음)
	2
	등록
	3. ~ 5. (현행과 같음)
제	24조(벌칙)
	<u>.</u>
	1. (현행과 같음)
	2
	등록
	3. ~ 7. (현행과 같음)
	26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 1	(2)
	•

- <u>을</u> 받지 아니한 산림교육프로 <u>을</u> -----그램에 <u>인증표시</u>를 하거나 이 ---- <u>등록표시</u>-----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2. ~ 6. (생 략) ③ (생 략)
- 1.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u>인증</u> 1. ----- <u>등록</u> 2. ~ 6.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